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3747
------------	------

2026년 6월 1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병운 의원 외 11명

나. 제안일자 : 2026년 6월 9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6년 6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병운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 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6. 10. ~ 2026. 6. 14.
- 제출의견 : 있음 (이메일 접수 2026. 06 .12.)
 - 고령화 사회 가속화에 따른 재정부담,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조세부담, 대중교통 적자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으로 반대 의견 제시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현행 노인복지법상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 차별이 발생하는 현실임
 -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인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 동의함

1)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교통정책과-10321호(2026. 6. 9.)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자 지원대상,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조례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서울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²⁾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복지 정책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 용어 정의(안 제2조)

- 동 조례안 제2조는 ‘어르신’,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을 각각

2)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21%돌파...이제 서울도 초고령사회’ 중앙일보(2026.01.04.)

정의하는 것으로 ‘어르신’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으로,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에서 말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정의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앞서 정의한 어르신이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를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의한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지원대상 (안 제3조)

- 동 조례안 제3조는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대상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당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과 관련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26조4) 및 같은 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제4호 마을버스운송사업

4)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5) 등에 따라 65세 이상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버스 교통비 지원대상을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하철과 버스는 같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버스 교통비 지원에서 만 65~69세 어르신들이 제외되는 것은 교통복지 차별로 비추어 질 소지가 있다 할 것임

※ 서울시 노인층 인구수 분포 현황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자료, '25.12월말 기준)

인구수 계	65세 미만	65~69세	70세 이상
9,229,548명	7,399,446명	648,113명	1,251,989명

다만,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대구시 등은 지원대상을 70세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69세 노인인구가 약 64만 8천명에 육박하고, 낮은 운송원가 및 환승할인 등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이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지원대상 기준을 70세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점도 있으며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버스비 지원 등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이 상이한 상황임

5)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인 및 어르신 교통비 등 지원 조례 현황

구 분	시행일	지원대상	관련 조례	
광역	인천시	'26.7.1.	인천 거주 <u>75세 이상</u>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
	대구시	'23.1.1.	대구 거주 '28년 <u>70세 이상</u> (23년 75세부터 1년씩 하향 조정)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시	'23.9.15.	대전 거주 <u>70세 이상</u>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서울	중구	'23.11.1.	중구 거주 <u>65세 이상</u>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24.9.1.	강남구 거주 <u>65세 이상</u>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25.9.1.	종로구 거주 <u>65세 이상</u>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교통비 지원 등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제5조)

- 동 조례안 제4조는 시장이 안 제3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⁶⁾에서는 고령자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⁷⁾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동 조례안의 비용추계 자료⁸⁾에 따르면 동 조례시행시 '27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8)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년부터 '31년까지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감면액은 연평균 1,157억 72백만원(총 5,7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동 제정안이 실행될 경우 관련 재원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동 조례안 제5조에서도 시장이 어르신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방법, 재원조달 사항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은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중단 등(안 제6·제7조)

- 동 조례안 제6조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그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관련 경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정산사업자와의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실제 서울시 통합환승할인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정산, 운송수입금 배분 등에 대한 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주)티머니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에서 타인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1. 비용발생요인 :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에 근거하여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지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578,864,348천원(연평균 115,772,870천원) -이하 생략-

등으로 운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후속조치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나 실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계획도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사후관리 및 준용(안 제8조·제9조)

- 동 조례안 제8조는 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사전 논의나 협약 등을 통해 구체적인 권한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⁹⁾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어르신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기시행하는 곳은 중구('23.11.1.), 강남구('24.9.1.), 종로구('25.9.1.) 등으로 관련 사업이 통합되고 시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근거로 사료됨

- 다만, 현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기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각자의 시스템을 통해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동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자치구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및 조정여부 그리고 시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병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47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6월 09일

발 의 자: 이병운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경훈, 김영옥,
김원중, 김지향, 남창진,
문성호, 유만희, 윤영희,
이경숙, 이성배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 마.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호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통비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3. 교통비 지원을 받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를 이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여부	판단 내용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지원대상의 기준을 규정한 선언적 조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4조(교통비 지원 등)	○	[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인구 추계 및 지원 한도액 가정을 통한 지원금 비용 발생이 예상됨 ⇒ 총 578,864,348천원 소요예상
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소관 부서(교통정책과)의 통상적인 내부 행정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제6조(지원체계 구축)	△	[기술적 추계 곤란] 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의 위탁 계약 등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계획(기존 시스템 연계 여부, 신규 구축 범위 등)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방식이 확정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5	제7조(지원 중단 등)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 조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법령 준용 등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6	제8조(사후관리)		
7	제9조(준용)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교통비 지원 등(안 제4조)

나. 전제

- (교통비 지원 등)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를 가정

- 월 대중교통 이용건수에 대중교통 중 버스 이용비율과 평균운임을 적용하여 월 버스 이용요금을 추정하고, 연간으로 환산함
- 대중교통 중 버스 이용 비율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중구·강남구 사례를 고려하여 지하철 56.2%, 시내버스 34.1%, 마을버스 9.7%를 적용함
- 70세 이상 평균운임은 시내버스 1,166원, 마을버스 1,001원 적용을 전제함
 - ※ 평균운임은 요금정산금액/승차건수로 전제, 환승이용도 포함되어 운임금액이 감경됨
- 5년간 추계는 국가데이터처의 '22년 기준 인구추계 자료의 연도별 70세 이상 인구 증가 비율을 적용함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70세 이상 서울인구수(명)	1,271,987	1,335,368	1,402,737	1,471,014	1,547,948	1,625,513
전년 대비 증가율	5.0%	5.0%	5.0%	4.9%	5.2%	5.0%

- (발생기간) 2027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7~2031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미 고려)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2027년~2031년)

라. 방법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공자료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578,864,34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교통비 지원 등(안 제4조)		104,705,527	109,987,896	115,341,460	121,373,816	127,455,649	578,864,348
	소계(a)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04,705,527	109,987,896	115,341,460	121,373,816	127,455,649	578,864,348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안적 금액

-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제적 입법¹⁾으로, 해당 안은 교통비 지원계획(일부 또는 전부 지원)에 따라 재정지출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과약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표본수, 조사방식, 조사기간, 분석 심도 등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작성자

시 의 회 사 무 처 재 정 분 석 과
재 정 분 석 과 장 이 선 희
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교통비 지원 등(안 제4조)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총 578,864,34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교통비 지원 등	104,705,527	109,987,896	115,341,460	121,373,816	127,455,649	578,864,348

1)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출내역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70세 이상 서울인구수(명)	1,271,987	1,335,368	1,402,737	1,471,014	1,547,948	1,625,513
전년 대비 증가율	5.0%	5.0%	5.0%	4.9%	5.2%	5.0%

(‘25년 7월 기준)

월 대중교통 이용건수 (천명, a)	버스 이용비율(b)		평균운임(원, c)		버스 무료 이용 금액(억원, a×b×c×12개월)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계
15,994	34.1%	9.7%	1,166	1,001	763	186	949

① 1차년도 소요비용 = 104,705,527천원

$$= \text{'25년 버스무료이용금액} \times \text{'26년 전년 대비 70세이상 인구증가율} \times \text{'27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949\text{억원} \times 105\% \times 105\%$$

$$- \text{'25년 버스무료이용금액} = \text{월대중교통이용건수} \times \text{버스 이용비율(시내버스,마을버스)} \times \text{평균운임(시내버스,마을버스)} \times 12\text{개월} = 949\text{억원}$$

$$= (15,994\text{천명} \times 34.1\% \times 763 + 15,994\text{천명} \times 9.7\% \times 186) \times 12$$

② 2차년도 소요비용 = 109,987,896천원

$$= \text{1차년도 소요비용} \times \text{'28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104,705,527\text{천원} \times 105\%$$

③ 3차년도 소요비용 = 115,341,460천원

$$= \text{2차년도 소요비용} \times \text{'29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109,987,896\text{천원} \times 104.9\%$$

④ 4차년도 소요비용 = 121,373,816천원

$$= \text{3차년도 소요비용} \times \text{'30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115,341,460\text{천원} \times 105.2\%$$

⑤ 5차년도 소요비용 = 127,455,649천원

$$= \text{4차년도 소요비용} \times \text{'31년 전년 대비 70세 이상 인구증가율}$$

$$= 121,373,816\text{천원} \times 105\%$$